

수원지방법원 2022. 11. 23 선고 2021나915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, 박연주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창수

2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홍성걸

변 론 종 결 2022. 9. 2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3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9. 2. 선고 2020가단531044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

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피고 주식회사 C은

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2020. 4. 13. 접수 제49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B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2019. 10. 8. 접수 제93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 또는 강조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[이 사건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인데, D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에 대해 부종성이 있어 그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채무인 원고의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. 원고는 주채무에 해당하는 E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금전거래가 200,000,000원의 돈으로 순환 이체를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자 물품대금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나,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, 즉 원고가 주장하는 E → 원고 → 주식회사 L으로 이어지는 물품 공급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, 원고와 원고 대표 K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(인천지방법원 2021고합450, 위 범죄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물품대금 관련 거래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) 등에 비추어 보면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]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염기창, 판사 김문성, 판사 정승화

[별지]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

[도로명주소] 수원시 영통구 R

철근콘크리트 경사철재트리스아스팔트성글지붕 20층아파트

지하1층 390.56㎡

1층 410.16㎡

2 내지 4층 각 406.80㎡

5 내지 20층 각 400.64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수원시 영통구 O 대 35058.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6층 S호 철근콘크리트조 84.90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35058.8분의 45.479. 끝.

